

임실군의회 입법예고 공고 2024-44호

임실군의회 이성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실군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 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임실군의회 의장



임실군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안 (이성재 의원 대표발의)

1. 제정이유

임실군이 출자·출연 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를 해당 기관이 예산을 집행한 후 정산하도록 하여, 예산의 집행과 반납의 투명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제2조)

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적용범위,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라. 출연금 등의 집행 기준, 정산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마. 감사, 정산 지침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4년 11월 16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1) 주 소: (55927)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임실군의회(의회사무과)

2) 전 화: 063-640-2883, 팩스 063-640-2699

3) 전자우편:charity81@korea.kr

4. 제정안: 붙임

임실군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이 출자·출연 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를 출자·출연 기관이 예산 집행 후에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집행과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임실군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출연 기관”이란 「임실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다.
2. “출연금”이란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임실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출자·출연 기관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위탁사업비”란 군이 사무를 출자·출연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또는 출자·출연 기관이 군의 사무를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군이 부담하는 제반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포괄한다.
4. “정산”이란 출연금,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의 세입과 세출을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출자·출연 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출자·출연 기관의 출연금 등에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해서는 법령 및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출연금 등의 집행 기준)

- ①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의 투명한 관리와 명확한 정산을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를 운용할 경우에는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집행하는 경우 출연금 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만들어 사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정한 운영지침을 따른다.

제7조(출연금 등의 정산 보고 및 검사 등)

①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보고서, 결산서 등 관계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정산보고서에 출연금 등의 지출내역 등에 대해 군수가 원하는 서류를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

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 출연금 등의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와 결산서 등을 기초로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산 결과 발생한 출연금 등의 집행잔액은 반환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서 제출받은 관계서류와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정산검사 결과를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 군수는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 등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을 감사하여야 한다.

제9조(정산 지침)

① 군수는 출연금 등의 정산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및 출자·출연 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산 지침을 마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연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
2.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3.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
4. 출연금 등의 반납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출연금 등의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침을 출자·출연 기관에 통보하고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지침에 따라 출연금 등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군수는 출자·출연 기관이 자체수입 확대에 출연금 등의 예산을 절감한 경우 「임실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24년도 예산을 결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결산) 출자·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산총액, 부채규모, 종업원 수, 수익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검사·보고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적어도 3년마다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관
2.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기관 중 제2조제3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

제27조(운영지침의 통보) 행정안전부장관은 출자·출연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운영지침을 정하고,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조직 운영과 정원·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편성·집행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3. 회계와 결산에 관한 사항

임실군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 임실군의회 이성재 의원